

경영위원회 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구성 및 운영	1
제3장 회 의	2
제4장 권한 및 의무	2
제5장 보 칙	4
부 칙	4

경영위원회 규정

2022. 12. 23. 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제10조의 각 부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되, 법령, 정관, 이사회규정상 규정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의 사내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③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권한 및 의무

제10조(부의사항) ① 경영위원회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

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한다.

②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가.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나.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다.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라. 사채의 발행 (공모 사채 제외)

마.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단, 자산총액 10% 이상은 제외)

2.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가. 자산총액 10% 미만,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 직접투자

나. 자기자본 2.5%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

다.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가지급금, 금전 대여

라. 자기자본 2.5% 이상의 소송 제기

마.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공장의 신설 및 중·단기 자금의 차입

바. 자기자본 2.5% 이상의 증여 및 기부금 제공

사. 회사의 예산·결산

아. 해외증권의 발행

자.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열거된 부의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제10조의2(세부사항 등의 위임)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세부사항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위원회 결의내용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통지의무 및 이사회 재의결)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이 이사회로부터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또는 결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각 이

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단, 결의사항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어느 이사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사록) ①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5 장 보칙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임원 또는 기획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